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별표 2)

등기관서명	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501

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 기 관 서 명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501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등기관서명	번호
<신 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501	<삭 제>	
영등포등기소	2541	<삭 제>	
강서등기소	2542	<삭 제>	
구로등기소	2543	<삭 제>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